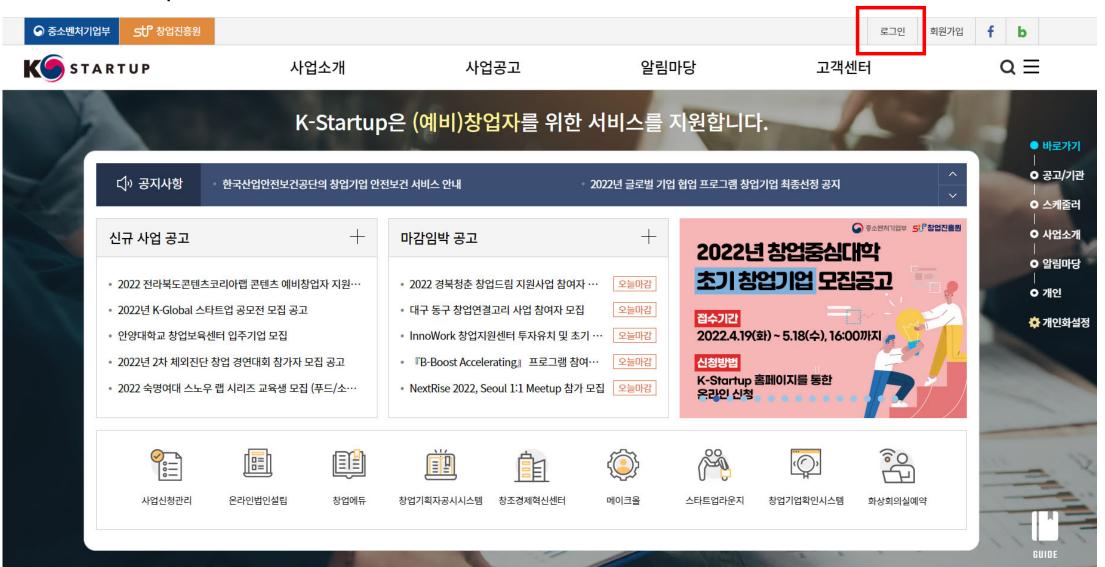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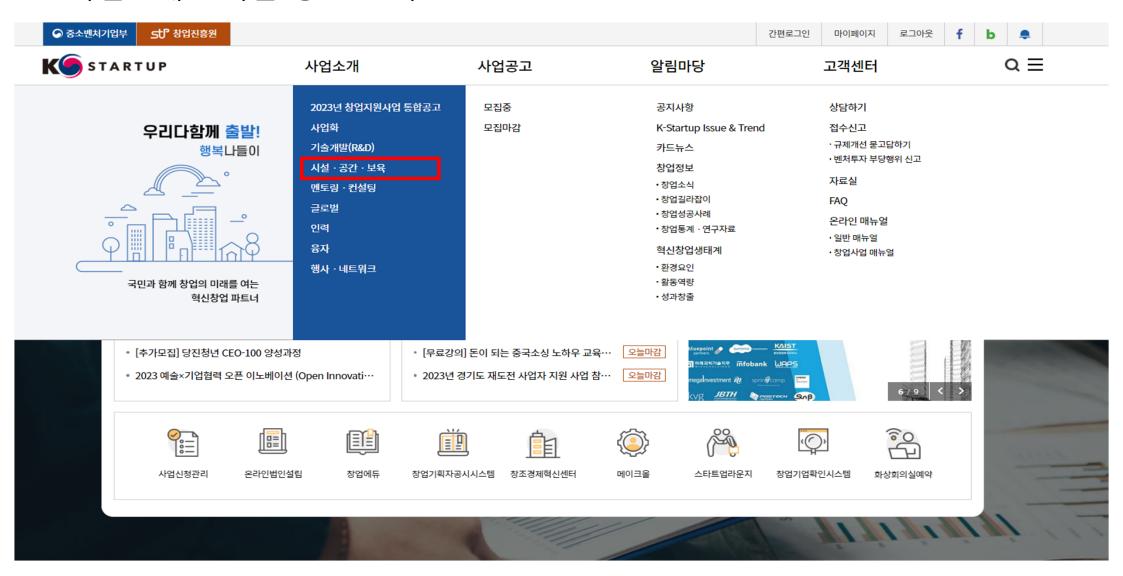
1. K-Startup 로그인



2. 사업소개 - 시설•공간•보육



3. 시설•공간•보육 -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





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

숙련된 경험·네트워크을 보유한 중장년 (예비)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저변 확대









섬유패션디자인 창업보육센터



서울창업허브 공덕



서울창업허브 성수



김해형 창업사관학교 운영사업



4. 스크롤 후 – One Click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확인



1인 창조기업의 창의적 제품 및 지식서비스 등이 성공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및 판로개척을 지원

○ 사업개요



지원대상

One Click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확인

-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(예비창업자)
 - * 예비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.
- * 1인 창조기업이란?

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하기

- * 정회원 온라인 신청완료 후 반드시 신청한 센터에 연락하여 정회원 승인요청, 승인여부 최종확인 필요
- 1인 창조기업 확인방법 : 센터에서 업종확인 및 상시근로자 여부 확인
- 정회원 신청 시 증빙서류
- * 예비창업자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* 개인/법인사업자 : (1)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(2)사업자등록증, (3)4대보험가입자명부 (3가지 서류를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)
-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.

(단,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)

- 공동창업자, 공동대표,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
-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
 - *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
 - *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자세히 살펴보기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세히 살펴보기

4-1. 1인 창조기업 확인해보기(자가진단표)

- 창업일 : 임의 날짜 지정 가능
- 1인 창조기업 업종확인(산업분류코드 5자리 입력:
 - 기 창업자 :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후 5자리 입력
 - 예비창업자 : 하고자 하는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후 5자리 입력
- 사업자 유형 : 해당 사업자 유형 선택(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할지 선택)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가입자 구분) : 본인이 해당하는 가입자 구분으로 작성
- 종업원채용여부 : 현재 직원이 있으면 선택
 - 아니요 : 아니요인 경우 완료
 - 예 : 예인 경우 직원 수 작성
- 창업후 종업원이 1개월 이상 없었던 기간의 유무 : 예 / 아니요 선택
 - 1개월 이상의 직원을 고용 했을 경우 입주희망 센터로 전화
- 위 모든 내용을 선택 후 완료



5. One Click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1인창조기업 확인 후 – 정회원 신청하기



1인 창조기업의 창의적 제품 및 지식서비스 등이 성공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및 판로개척을 지원

○ 사업개요



지원대상

One Click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확인

-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(예비창업자)
 - * 예비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.
- * 1인 창조기업이란?

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하기

- * 정회원 온라인 신청완료 후 반드시 신청한 센터에 연락하여 정회원 승인요청, 승인 벼부 최종확인 필요
- 1인 창조기업 확인방법: 센터에서 업종확인 및 상시근로자 여부 확인
- 정회원 신청 시 증빙서류
- * 예비창업자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* 개인/법인사업자 : (1)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(2)사업자등록증, (3)4대보험가입자명부 (3가지 서류를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)
-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.

(단,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)

- 공동창업자, 공동대표,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
-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
 - *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
 - *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자세히 살펴보기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세히 살펴보기

6.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상태 – 신청하기







7. 정보수정 - 회원유형 - 해당하는 유형으로 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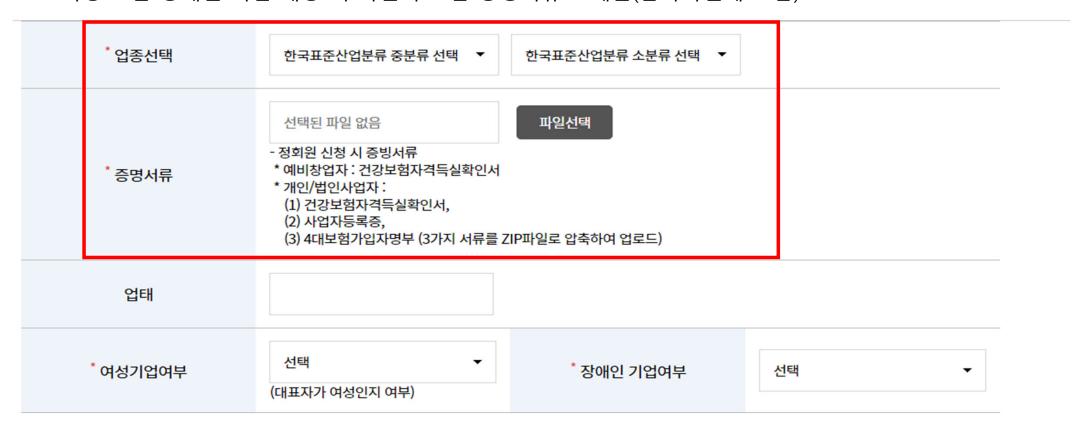


센터관리자



7. 정보수정

- 4-1 선택했던 업종으로 확인(한국표준산업분류)
- 증명서류 첨부 필수(압축파일로 제출)
 -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, 개인정보로 인해 비밀번호 제목에 표시 ex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생년월일)
- 여성 또는 장애인 기업 해당 시 확인서 또한 증명서류로 제출(압축파일에 포함)



7. 정보수정(맨 아래) - **기타정보 - 전라북도 - 전북 전주시 선택** - 제출. 끝.

